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8
----------	----

2018. 10. 15. (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숙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8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2018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2018년 10월 15일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숙애 위원장)

가. 제안이유

본 조례 개정은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품질성능평가지험 방법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 서류제출 사항을 실효성 있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품질성능평가시험(BMT) 평가방법 변경(안 제 22조)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 변경(안 제24조)
- 서류제출에 설치프로그램 추가(안 제25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 본 개정 조례안은 품질성능평가시험 방법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을 현실성 있게 개선·보완하고, 사업자의 서류제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 주무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품질성능평가시험 방법을 도교육청이 직접 실시하여 기술능력 평가에 반영하도록 개선한 것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전 사업자의 제출서류와 검증에 관한 사항을 강화한 것은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 관리 감독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과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과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뢰하고”를 “직접 실시하고”로, “제품구매”를 “기술능력 평가”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무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이 별표의 전체 BMT평가 항목을 시험할 경우 BMT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BMT를 의뢰”를 “주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마다 계약을 체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BMT를 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도의회에서”를 “도의회의회장이”로, “상세내역”을 “상세내역, 설치프로그램”으로, “즉시 제출”을 “제출”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최우수 물품 평가방법 등) 교육감은 가장 우수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등의 다른 법률과 위임행정규칙을 우선 적용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p> <p>1. <u>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해야 한다.</u></p> <p>2. <u>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무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평가지험("BMT"라 한다. Bench Mark Test)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u>제품구매에 반영해야 한다.</u> <단서 신설></u></p> <p>제24조(업무·예산의 경감) 교육감은 평가 업무 및 예산의 경감</p>	<p>제22조(최우수 물품 평가방법 등)</p> <p>-----</p> <p>-----</p> <p>-----</p> <p>-----</p> <p>-----</p> <p>-----</p> <p>-----</p> <p>-----</p> <p>1. <u>법 제20조제2항과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제6항</u>-----.</p> <p>2. -----</p> <p>-----</p> <p>-----</p> <p>----- <u>직접 실시하고</u>---- <u>기술능력 평가</u>-----</p> <p>--. <u>다만, 주무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이 별표의 전체 BMT 평가 항목을 시험할 경우 BMT를 의뢰할 수 있다.</u></p> <p>제24조(업무·예산의 경감) ① --</p> <p>-----</p>

을 위하여 2년 이상의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BMT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서류제출·검증) ① (생략)

②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제1항,
제안서 및 평가의 상세내역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
며, 입찰공고문에 서류제출 사
항을 공개해야 한다.

----- 주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마다 계약을 체결--

-----.

② 교육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BMT를
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제출·검증) ① (현
행과 같음)

② ----- 도의회의장이 -----
----- 상세내역, 설치프
로그램 제출-----

-----.

관계 법령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법률 제15371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